

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(제46조제3항 관련)

구 분	기 준
부 지	20,000m ² 이상
건 물	10,000m ² 이상
시 설	- 필수시설 가. 농수산물 처리를 위한 집하·배송시설 나. 포장·가공시설 다. 저온저장고 라. 사무실·전산실 마. 농산물품질관리실 바. 거래처주채원실 및 출하주대기실 사. 오수·폐수시설 아. 주차시설 - 편의시설 가. 직판장 나. 수출지원실 다. 휴게실 라. 식당 마. 금융회사 등의 점포 바.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

비 고

1. 편의시설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.
2. 부지 및 건물 면적은 취급 물량과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.